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83904(본소), 2023나8392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여금]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83904(본소), 2023나8392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소1529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9.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소15297(본소), 2022가소 581091(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되풀이 내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내지 제4행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경 C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한 사실, C의 배우자인 D 명의 계좌에서 2016. 2. 1.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당시 D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원고”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C에게 원고가 부동산매수인 지위를 피고, D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기지급 계약금의 인수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15. 8. 22.경과,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날인 2016. 2. 1.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인 원고가 C과의 사업상 관계상 2015. 6.경부터 2020. 2.경까지 D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적요란에 원고 성명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D 명의 계좌에서 2016. 2. 1.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된 2,000만 원이 원고가 C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중 일부의 수표금이 전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22.경 C을 ‘피고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C은 위 고소사건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도 ‘원고로부터 2015. 8.경 수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점(만약 C이 위 고소사건에서 2016. 2. 1. 피고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이 원고 주장의 계약금 전달 명목이라고 주장하면 쉽게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주장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자신에게 부동산매수인 지위를 이전해 준 피고에게 피고의 기지급계약금에 해당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5. 12. 7. 1,150만 원, 2016. 6. 30. 850만 원을 각 지급한 이후로 이 사건 제소 전까지 약 7~8년간

피고에게 인수대금 이중 지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2021. 3. 31. 원고의 배우자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차전1048호로 이 사건 반소청구와 같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E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진행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E는 단순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일 뿐, 원고가 차주임이 드러나자 2021. 10. 20. 그 소를 취하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41546 사건), 이에 따라 원고는 머지않아 피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2022. 10. 4.에서야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④ 부동산중개업자이던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수대금을 종전 매수인인 피고 등에게 전달해달라면서 수표를 교부했으면 그 직업의 특성상 가까운 시일 내에 종전 매수인인 피고에게 그 인수대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수령했으면 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징구함이 통상적인 것인데도 이러한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5. 8. 22.경 C에게 피고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을 포함하여 수표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C이 피고에게 그중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반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4. 11.경 피고가 아닌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뿐만 아니라 C도 2020. 1. 29.경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에게 ‘E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 C이 2020. 5. 26.경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4. 11. 자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뿐만 아니라 C도 위 1,000만 원을 대여한

자는 피고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차전10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이고 그 이후로 진행된 제1심 소송도 피고가 수행한 점, ④ C은 2019. 4.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를 부탁하면서 원고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C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C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변제를 앓게 되어 그 입장이 난처해지자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박은주, 판사 변종두